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사가 건축물을 설계할 때에 작성・검토하는 설계도서에 대하여 건축사협회로 하여금 전자도면(CAD)기반 설계도서 구성·작성방법을 규정한 '전자설계도서'와 「한국건축규정」 인허가 사항에 대한 해설, 작성방법을 규정한 '한국건축규정 기반 설계도서 품질확인 지침' 등 표준 지침을 마련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 제23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중 “설계함에 있어”를 “설계할 때”로, “정하여”를 “정하고, 설계도서의 품질을 확인함으로써”로 한다.

제2호다목 중 “3.0”을 “2.10.”으로 하고, 2.11 및 2.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1. “전자설계도서 작성 지침”이란 건축물의 표준화된 방식의 도면 관리 및 자료 공유를 위하여 전자도면(CAD)을 기반으로 작성하는 지침을 말한다.

2.12. “한국건축규정 기반 설계도서 품질확인 지침”이란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건축기본법」 제25조에 따라 공고하는 「한국건축규정」 처리 기준과 작성 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한 것으로 설계도서 작성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말한다.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제17호 및 제18호로 하고, 제18호(종전의 제16호) 중 “2016년 7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하며,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전자설계도서 작성 지침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이

하 “건축사협회”라 한다.)로 하여금 전자설계도서 작성 지침을 작성·보급하여 건축사가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건축사협회는 지침 작성·보급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6. 한국건축규정 기반 설계도서 품질확인 지침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협회로 하여금 한국건축규정 기반 설계도서 품질 확인 지침을 작성·보급하여 건축사가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건축사협회는 지침 작성·보급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목 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설계자가 건축물을 설계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설계도서의 작성기준 등을 정하여 양질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 ---------- -- 설계할 때 ---------- ---------- -- 정하고, 설계도서의 품질을 확인함으로써 ----------.
2. 용어의 정의 다. (생 략) 2.1~2.9. (생 략) 3.0. (생 략) <신 설>	2. --------- 다. (현행과 같음) 2.1~2.9 (현행과 같음) 2.10. ---------- 2.11. “전자설계도서 작성 지침”이란 건축물의 표준화된 방식의 도면 관리 및 자료 공유를 위하여 전자도면(CAD)을 기반으로 작성하는 지침을 말한다. 2.12. “한국건축규정 기반 설계도서 품질확인 지침”이란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건축기본법」 제25조에 따라 공고하는 「한국

	건축규정」처리 기준과 작성 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한 것으로 설계도서 작성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말한다.
<신 설>	15. 전자설계도서 작성 지침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로 하여금 전자설계도서 작성 지침을 작성·보급하여 건축사가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건축사협회는 지침 작성·보급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16. 한국건축규정 기반 설계도서 품질확인 지침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협회로 하여금 한국건축규정 기반 설계도서 품질 확인 지침을 작성·보급하여 건축사가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건축사협회는 지침 작성·보급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5. (생 략)	17. (현행 제15호와 같음)

16. 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 ---------- ---------- ---------- ------- 2027년 1월 1일 --- ---------- -------12월 31일-------- ---------- ---------- -----.